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교통문화연수원 종합감사 -

2020. 12. .

## 처분요구일람표

1. 회계관직 운영 부적정 (주의)
2. 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3. 강사수당 지급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주의)
4. 저수조 위생관리 부적정 (통보 및 주의)
5. 위험물 안전관리 부적정 (통보 및 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교통문화연수원  
관 계 부 서 ☎☎☎  
내 용

### 1. 회계 관직 겸직

「지방회계법」 제36조에 따르면 재무관과 지출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관리규정」 제56조에 따르면 연수원의 회계담당은 지출 회계책임자로 원장, 지출담당으로 사무국장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 총괄 담당관인 재무관은 원장으로 하고, 지출담당인 지출원은 사무국장으로 직무를 분리해 운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재무관과 지출원은 회계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겸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0. 12. 현재까지 원장이 재무관과 지출원을 모두 겸직 하는 등 회계 법령을 위반하였다.

### 2.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미 이행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관리규정」 제5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업무담당자, 재무관, 지출원 등 회계관련 직원은 모두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재정보증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2019년과 2020년 2년간 재무관인 원장을 비롯하여 총 5명의 회계관련 직원이 재정보증 없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등 회계 법령을 위반하였다.

### 3. 회계직인 미 비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명, 관서명, 직명을 새긴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지출관은 관서명과 직명이 새겨진 직인을 비치 및 운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세입징수, 계약, 지출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등의 회계직인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연수원장 명의의 공인으로 일괄 대체하여 사용하는 등 회계 법령을 위반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직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고,**(주의)**
- ② 관련자 2명에게는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 ③ 관련자 1명에게는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교통문화연수원  
관 계 부 서 ☎☎☎  
내 용

### 1. 원천징수 부적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제3장 지방공무원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의 보수에서 원천징수 및 공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 직원의 개별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했다.

한편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상근 전체 임·직원 13명의 점심식사 운영을 위해 특정 식당에서 매식하고 매월 개별 식대를 직원들의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2018년부터 2020. 12. 현재까지 3년간 상근 전체 임·직원 13명에게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임·직원의 보수에서 매월 개별 식대(10만원 내외)를 원천징수 하는 등 회계 규정을 위반하였다.

### 2. 반환금 처리 부적정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02-02(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목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에 대하여 익년도 세출예산(802-02)에 편성하여 반납처리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처리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총 보조사업 11건에 대한 반납금 합계액 17,624천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과목인 순세계잉여금 과목에서 반납 징수결의라는 임의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반납 처리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또한 징수결의서, 지출결의서, 구입과지출결의서 등 회계서류는 모두 관련대장에 등록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의 증제 번호, 원인행위 증제 번호, 지급명령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회계서류를 관리하는 등 회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단위:천원)

사업년도	사업건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액	반납금
합 계	11건	2,635,000	2,618,927	16,074	1,550	17,624
2019	운영비 보조금 등 5건	1,307,000	1,292,329	14,671	595	15,266
2018	운영비 보조금 등 6건	1,328,000	1,326,598	1,403	955	2,358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은**

- ① 앞으로 임직원 급여 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회계업무가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주의)
- ② 관련자 2명에게는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훈 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수당 지급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소 관 청 교통문화연수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제21조 제1항 제19호가목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는 그 필요경비를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sup>1)</sup>'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89조, 제94조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연수원은 강사수당 등 지급액이 12만 5천원 초과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8.8%(지방소득세 0.8% 포함)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1) 필요경비 변경 내역

구분	'18. 3월 이전	'18. 4~12월	'19.1.1. 이후
수당 등 지급액	250,000원	166,666원	125,000원
필요경비공제율	80%	70%	60%
원천징수 세율	4.4%	6.6%	8.8%
과세최저한	5만원		

그런데도, 연수원에서는 2019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강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을 판단하였어야 하나, 교통약자교통안전교육 1회당 강사수당이 3만원이라며 매달 한꺼번에 지급하면서도 16명의 강사에게 6,192,570원의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2019년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은 15명의 강사에서 기타소득세 8.8%를 공제하지 않고 6.6%(2018.4.1.이후 적용 세율)를 공제하여 175,930원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2019 운수종사자교육은 26명의 강사에게 기타소득세 4.4%(2018.4.1.이전 적용 세율)를 공제한 결과 2,234,400원을 징수하지 않고 강사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은**

- ① 앞으로 강사수당의 소득세가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원천징수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주의)**
- ② 관련자 4명에게는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주 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저수조 위생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교통문화연수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는 [표 1]과 같이 건축물 내 지하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표 1]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저수조 설치 현황

연번	대상시설명	설치위치	건축물 연면적	시설재질	저수조 용량	비고
1	교통문화연수원 지하저수조	구미시 인동 36길 98	5,760.51㎡	콘크리트	40 TON	
2	교통문화연수원 고가저수조				18 TON	미사용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대상이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3천㎡이상으로 하고, 그 외 시설은 5천㎡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에는 소유자 등은 반기에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저수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마지막 수질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무자 및 교육생 등 불특정 다수가 상시로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위생관리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저수조 관리실태

연도별	저수조 설치 위치(지하)	저수조 용량(㎡)	수질검사 (년 1회)	저수조 청소 (년 2회)	저수조 청소 주기(개월)	저수조위생점검기준 (월 1회)
2018	교통문화 연수원 내	40	2018.10.19.	2018.4.21.	-	미실시
				2018.9.21.	5	
2019			2019.10.16.	2019.4.27.	7	
				2019.9.20.	5	
2020			2020.9.29.	2020.5.16.	8	
				2020.9.19.	4	

그런데도 위 관서는 [표2]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저수조의 위생점검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일정한 주기를 두고 실시하지 않고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에 걸쳐서 불규칙하게 실시하여 수돗물 위생관리에 반하게 되었고, 2020. 9. 29. 수질 검사 기관에 의뢰한 시료검사 성적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0. 5. 16. 및 2020. 9. 19. 2회에 걸쳐서 실시한 저수조청소 증명서에는 대상시설로 18톤 고가저수조에 대하여 청소를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청소비용 400천 원을 그대로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저수조 청소 당일 담당자 ♀♀♀는 현장을 감독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지만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저수조 내부 수중 바닥에는 침식물 또는 부유물질이 발견되고, 내부 벽면에 물 띠가 그대로 있고, 저수조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에는 도장이 벗겨져 먼지가 쌓여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돗물 이용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은

- ①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저수조 내부의 침식물·부유물 등의 제거 방안을 강구하시고,(통보)
- ②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저수조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③ 관련자 1명에게는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훈 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위험물 안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교통문화연수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강의실 내 난방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를 허가받고, 아래 [표]와 같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다.

[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위험물 허가현황

구 분	품 명	허가량	허가번호	설치장소	비 고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제2석유류	2,400L	1991.7.2. (제24-4030-910702호)	교통문화연수원 식당 건물	
	경유	6,500L	1991.7.2. (제24-4029-910702호)		

### 1.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의무 미이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내지 제68조 규정에는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는 당해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 등의 명칭, 점검의 방법 및 결과, 점검 년월일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5조 및 제39조 제1항 제7호에는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 제2019-4호)」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1994. 9. 23. 위험물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 후 2020. 12. 4. 감사일 현재까지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2개소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 의무를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 2.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기준 부적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중요기준 또는 세부기준에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8]에는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것을 중요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별표8]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험물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의 뚜껑은 쉽게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6조 제1호에 따르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을 위하여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조소 등의 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험물저장시설 내 가연물(폐목재, 소파 등 약1톤)을 쌓아놓고, 위험물 주입구 뚜껑이 없는데도 방치되어 있고, 탱크 상부에는 허가 외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저장시설 내 방화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위험물 표지·게시판은 방화에 관한

사항과 유별·품명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등 필요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험물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의 뚜껑은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장애물로 인하여 점검을 할 수 없도록 방치하였고, 인화방지망은 막힘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은

- ① 지하탱크저장소 외부에 적치된 가연물과 미허가 구조물 제거, 위험물 주입구 뚜껑 설치 등 방화환경 정비와 위험물 표지판 보완 등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고,(통보)
- ② 앞으로 년 1회 이상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③ 관련자 1명에게는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훈 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